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September 18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룩셈부르크: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신규 법안 발의

2023년 7월 13일,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룩셈부르크 고용주 협회(Luxembourg Employer's Association) 및 노동조합 간의 3자 협약("Solidaritéitspak 2.0.")의 일부로서 디지털 전환 및 생태·에너지 전환으로의 투자 촉진을 위한 변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現 투자세액공제제도("Luxembourg Income Tax Law", 룩셈부르크 소득세법 제152조)

룩셈부르크 소재 기업들은 현재 두 가지 유형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부동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의 세액공제율은 €150,000까지는 적격 자산의 총 취득가액의 8%이며 €150,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2%가 적용됩니다. 일부 생태학 장비 유형에 한해서는 세액공제율이 9% 및 4%로 각각 인상됩니다.
- 특정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 투자"의 세액공제율은 당해 추가 투자금액의 13%입니다.

법안의 주요 개정 사항

현 제도에 대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전환, 생태·에너지 전환에 대한 신규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추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기업 내 디지털 전환, 생태·에너지 전환 투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제도가 이를 대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규 세액공제제도는 적격 자산의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영업비용에도 적용됩니다.

동 법안은 어떤 유형의 투자가 신규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우선, 계획하는 투자가 디지털 전환 또는 생태·에너지 전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의 구현과 활용을 통하여 프로세스 혁신 또는 조직 혁신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생태·에너지 전환은 생산, 에너지 소비 또는 자원의 이용 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모든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투자계획이 상기 조건을 우선 충족 후, 다음의 추가 조건을 충족하는 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산 유형:** 최소 3년에 걸쳐 상각할 수 있는 감가상각 유형자산(자동차 및 건물 제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지 않은 특허 또는 소프트웨어가 주로 해당됩니다.
- **비용 유형:** 외부 컨설팅 비용, 직원 급여, 프로젝트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 **달성 목표:**
 - **디지털 전환:** 예) 생산성이나 에너지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신규 생산 프로세스 구현
 - **에너지 전환:** 예) 기업의 자가소비용 에너지수요 충당을 위한 비화석원료 기반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저장

또한 동 법안은 **새로운 증명·인증 절차(attestation & certification system)**를 도입합니다.

- 증명 시스템의 일환으로 납세자는 경제부에 적격성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에는 프로젝트의 명칭, 설명, 소재지, 목적, 목표 달성방안, 시작일 및 종료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제부는 증명서를 발행하기 전 자문위원회와 함께 해당 정보를 신중히 검토합니다.
 - 후속적으로, 비용의 현실성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연간 증명서가 발급되고, 해당 증명서는 세금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연간 증명서는 신규 투자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대상연도 말로부터 2개월 이내 요청되어야 하고, 요청에 따라 경제부는 청구 대상연도말로부터 9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서는 해당 증명서 신청 이후에 발생한 투자 및 영업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러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Grand-Ducal 규정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새로운 증명·인증 절차에 의해 확정된 디지털 전환 및 생태·에너지 전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투자비와 운영비의 18%입니다. 반면, 상각대상 유형자산의 경우 6%가 적용되는데, 이는 해당자산이 글로벌 투자에 대한 12% 세액공제 대상임을 종합 고려하면 18%의 공제율에 이른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신규 투자세액공제 제도 수혜를 적용받는 특허와 소프트웨어 소득은 룩셈부르크 소득세법 제50조의3(Article 50ter Luxembourg income tax law, "LITL")에 따른 특허박스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글로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글로벌 투자에 대한 현행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본 법안으로 €150,000 구간이 폐지되고, 세율이 8%에서 12%로 증가한 단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전과 동일하며, 유일한 변경사항은 글로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서 신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취득액이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단,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취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적용대상입니다.

결과적으로, 회계연도동안 적격자산의 취득 및 투자비용에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특정 유형의 생태학 장비투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14%가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특허박스제도 혜택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월공제

법인세 부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투자세액공제분을 제외한)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이루어진 회계연도 이후 최대 10년간 이월될 수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 및 시사점

이 법안은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추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며, 여름 의회 휴회와 10월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투표가 완료되면 2024년 과세연도부터 새로운 세액공제가 시행됩니다.

법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투자세액공제가 Pillar 2 목적의 "적격환급가능 세액공제"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Pillar 2의 범위에 포함되는 회사는 상기 언급된 법안 하에서 유효세율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Pillar 2 목적과 룩셈부르크 내국세 목적에서 투자세액공제가 다르게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룩셈부르크의 이행법 공표 이후 보다 자세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2 전 5653 (2023.06.28)

제목: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메모리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인인 000유한공사(이하 "XXX"라 한다)와 000(이하 "YYY"라 한다)에 대한 원부자재, 고정자산 공급 등에 따른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쟁점매출채권 중 일부는 통상적인 회수기일(9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함
- 청구법인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법인세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XXX와 YYY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제기

2) 쟁점

- 지연회수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 처분청 주장 |
|--|--|
| <p>국외특수관계법인 XXX 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관련성 및 대여금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p> <p>1) XXX 는 청구법인의 해외 외주임가공 업체로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p> <p>- XXX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 유형자산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기술,</p> | <p>국외특수관계법인 XXX 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관련성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대여금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도 없음</p> <p>1) 청구법인은 2015~2017 사업연도 세무조사 시 XXX 와 청구법인간 업무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자인하였으며, 조사 당시와 2018~2019 사업연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함</p> |

| | |
|--|--|
| <p>공법, 도면 및 SPEC 등을 활용하여 청구법인 또는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제조</p> <p>2) XXX 의 자금사정 및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u>쟁점채권 회수가 지연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지속적인 회수노력을 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XX 사업활동이 청구법인의 글로벌 사업에 있어 중요하므로, 자금회수가 청구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임 -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회수노력을 기울여와 2021 사업연도 말 매출채권 대부분 회수 | <p>2) XXX 는 흑자 법인으로,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XX 는 자신의 재정적 사정을 이유로 청구법인 외의 다른 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연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연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조차 수령하지 않음 - 청구법인은 2018~2019 사업연도 차입규모 증가로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이자비용 및 신용위험이 증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매출채권회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 |
| <p>국외특수관계법인 YYY 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관련성 및 대여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p> <p>1) <u>청구법인의 YYY 인수목적, 실제 거래내역 등을 감안할 때 YYY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있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은 YYY 인수를 통해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일본 현지 거래처 확대 및 대응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 - YYY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 고정자산 등을 매입하여 자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외주가공 용역도 일부 수행하고, 청구법인의 판매법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p>2) YYY 의 영업실적, 누적결손규모, 자금사정 등 <u>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YYY 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권회수를 일부 지연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임 - 청구법인은 YYY 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 채권회수노력을 꾸준히 해옴 | <p>국외특수관계법인 YYY 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관련성이 없고, 대여금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도 없음</p> <p>1) YYY 는 청구법인과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별도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업무 연관성이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YY 는 사업 목적이 청구법인 제품의 판매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제품 및 용역관련 매출, 매입거래를 하고 있으나 규모는 미미한 수준 - 청구법인은 부실법인을 인수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으로 실질적인 금전대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차입금 지급이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p>2) YYY 는 지연이자를 납부하지도, 다른 거래처에 <u>대금지연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자본잠식 상태에서 타 업체를 인수하기도 하는 등 쟁점 매출채권 미회수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YY 인수 이후 YYY 의 당기순손실은 급증하는데,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지연회수 외에도 YYY 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며, OOO 를 흡수합병하기도 하는 등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지급에 소홀하였음 |

4) 판단

-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이며, XXX는 청구법인의 외주가공용역을 수행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중국 내 거래처에 인쇄회

로기판을 공급하고 로열티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XXX 간 영업활동의 연관성이 인정됨. 아울러, 당시 XXX는 누적된 결손 등으로 쟁점매출채권을 회수가 XXX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점, 2020사업연도 이후 쟁점매출채권을 적극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XXX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합리적 사유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법인은 글로벌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차세대 기술 공동 개발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 청구법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YYY를 인수한 점, YYY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 고정자산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에 외주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YYY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인정됨
- 또한, 청구법인은 주로 YYY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어 YYY의 정상적인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부자재 공급을 지속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03 관세

해외) 멕시코, 무역협정 미체결국에 임시관세 부과

1) 개요

8월 16일, 멕시코 정부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392개 품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5~25%의 임시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특히, 철강의 경우 최대 관세인 25%가 부과되며 멕시코는 한국의 철강 수출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POSCO와 같은 한국의 철강업체들은 멕시코와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현재시점에 부과되는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었음.

2) 상세 내용

멕시코의 예상치 못한 수입 관세 도입은 최대 25%까지 인상되며 국제 무역 환경에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멕시코가 해외국가와 체결한 FTA 협정은 아래와 같음.

| 협정명 | 상대국 |
|-------|---------|
| USMCA | 미국, 캐나다 |

| | |
|--------------|--|
| CPTPP |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
| 일본 EPA | 일본 |
| EU FTA |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 중미 FTA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
| 볼리비아 FTA | 볼리비아 |
| 우루과이 FTA | 우루과이 |
| 니카라과 FTA | 니카라과 |
| 파나마 FTA | 파나마 |
| MERCOSUR FTA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 이스라엘 FTA | 이스라엘 |
| 코스타리카 FTA | 코스타리카 |
| EFTA 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 칠레 FTA | 칠레 |
| 영국 FTA | 영국 |
| 페루 FTA | 페루 |

특히 철강관세와 관련한 조치는 저렴한 중국 강철의 유입에 대응한 관세 조치로, 美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 환영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멕시코와 함께 중국의 저가 철강 제품을 겨냥한 협력적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지를 보임.

멕시코 경제부가 발표한 일반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상 관세 부과 규칙 일부 수정안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대나무, 고무, 화학, 석유, 비누, 종이, 세라믹 제품, 유리, 약기 및 가구, 특히 취약에 직면한 모든 부문에 확실하고 공정한 시장 요건 제공, 국내 산업 회복 및 발전 촉진, 내수 시장 지원을 위해 멕시코와 무역협정(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392개 수입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5~25%의 임시 관세가 부과되며, 내년 10월 인하·철폐하려던 9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음.

3) 시사점

멕시코의 철강 관세는 한국 기업의 철강 수출에 중대한 방해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이 같은 상황은 무역 협정이 각 국가를 예상치 못한 무역 정책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 무역 협정의 세계 무역에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됨.

국내)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1)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7(목)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정식 서명하였음.

2) 상세 내용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으며 2022년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으며,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하여 이번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음.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으로서 높은 소비 잠재력을 지녔고,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에 해당함. 특히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참고: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 ('21년 기준, 미국 지질조사국(USGS))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며,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음.

[필리핀 수입 관세율]

- 승용차: (기본 관세율) 30%, (日) 20%, (中) 5%, (한국) 5%→0%
- 화물차: (기본 관세율) 30%, (日) 0%, (中) 5%, (한국) 5%→0%
- 자동차 부품: (기본 관세율) 3~30%, (日) 0%, (中) 3~5%, (한국) 3~30%→0%
- 친환경차: (기본 관세율) 30%, (日) 20%, (中) 5%, (한국) 5%→0%

3) 시사점

한국과 필리핀 간의 FTA 협정의 주요 수혜산업은 자동차 산업 및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서, 필리핀은 최대 자동차 수입국 중 하나로 판단됨.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